

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4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 8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서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나, 우리 군 조례 내용 중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어, 이를 개선하여 유료화장실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평창군 유료화장실 운영자의 준수사항 정비(안 제17조)
 - 운영자는 화장실 내에 편의용품을 비치·제공하고,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해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, 상위 법령의 위임 없는 의무부과규정(제1호 및 제4호) 삭제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7. 7. 17. ~ 8. 6.) : 의견제출 없음
- 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3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4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5) 조례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준수사항)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1.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·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4. 기타 화장실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17조(준수사항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삭 제>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

관계법령 발취

○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(유료화장실)

-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·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유료화장실의 설치·운영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-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

○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(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)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<개정 2009.5.6., 2014.12.3., 2017.5.8.>

1.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,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
2. 악취의 발산과 파리·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·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 주 3회 이상,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
3.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,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한다.
4.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,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

[시행일 : 2018.1.1.] 제7조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
연락처	(033) 330 - 2340